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[채권-재간접형]

집합투자기구
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1.25~ 2013.01.24

라. 집합투자업자: 피델리티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한국투자증권, 대우증권, 한화투자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증권, 미래에셋증권, 아이비케이투자증권, 우리은행, 외환은행, 한국시티은행, 홍콩상하이은행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6.01	제 20 조 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	① <생략> 5. 종류 CP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7. 5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, 집합투자기구, 특정금전신탁	① <생략> 5.종류 CP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제 11 호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7. 5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, (삭제), 특정금전신탁
2012.06.01	제 20 조의 2 (판매수수료)	② <생략>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	② <생략> (삭제) (이하 기재 생략)
2012.06.01	제 23 조 (환매수수료)	② <생략>	② <생략> 1. 2012년 8월 31일까지 환매청구시: <동일> 2. 2012년 9월 3일 이후부터 환매청구시: 환매수수료 없음
2012.06.01	제 26 조 (수익증권의 환매연기)	① 가. (기재생략) 나.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	① 가. (기재생략) 나. 모두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

		기된 경우	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
2012.06.01	제 27 조의 2 (투자신탁의 전환)	⑧ 수익자가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<생략>	⑧ 2012년 8월 31일까지 환매 청구하는 경우로서 수익자가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<생략>
2012.06.01	제 39 조 (자산운용지시 등)	④ 집합투자자는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<생략>	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(삭제) 전산시스템에 <생략>
2012.06.01	제 49 조 (신탁계약의 변경)	③ <생략> 다만, 제 4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③ <생략> 다만, 제 4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012.01.25	제 1 조 (목적 등)	② <생략>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<생략>	② <생략>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<생략>
2012.01.25	제 2 조 (투자신탁의 종류,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)	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타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. (이하생략)	① 이 투자신탁은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. (추가)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2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집합투자기구이다. 2.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이다. 3. 이 투자신탁은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추가형 집합투자기

			구이다. 4.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?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, 투자성향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 제 231 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나이다. 5.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나이다. 6. 이 투자신탁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권을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법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나이다.
2012.01.25	제 10 조 (신탁금의 납입)	② <생략>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③<생략>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투자신탁의 원본액으로	② <생략> 공고되는 <u>1,000 좌당</u>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<u>금액을 1,000으로 나눈</u> 금액으로 한다. ③<생략> 설정하는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<u>공고되는 1,000 좌당</u> 기준가격을 곱한 <u>금액을 1,000으로 나눈</u> 금액은 투자신탁의 원본액으로
2012.01.25	제 26 조	① <생략>	① (삭제)
2012.01.25		2. 가. <생략> 응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<생략> 나. <생략> 응하는 것이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	2. 가. <생략>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<생략> 나. <생략> 응하는 것이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

		있는 경우	경우
2012.01.25	제 48 조 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	①<생략> 다음 각 호의 서류 작성과 함께 투자신탁의 외부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	① <생략>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<u>부속서류를 작성</u> 하여야 한다.
2012.01.25	제 49 조 (신탁계약의 변경)	③ <생략> ④ <생략> ⑤ <생략>	③ (삭제) ③ 다만, 제 4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삼일회계법인	1년	264 만 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

- 적정함
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